

學術研究用役費 料率 規定

第1條(目的) 韓國地盤工學會가 修行하는 研究用役의 費用 중에서 學會運營費에 대해 일정한 料率을(이하 “研究用役의 指定 料率” 이라함) 指定함으로써 研究修行 事業費 支援을 圓滑하게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第2條(研究用役의 指定 料率) 研究用役의 指定 料率은 아래와 같이 金額 規模를 基準으로 정한다.

1. 1억 以下 : 30%
2. 1억 以上 ~ 3억 以下 : 1項과 3項간의 보간 比率
3. 3억 以上 : 20%

第3條(個人受注 功勞 事業에 대한 指定 料率 引下)

1. 指定 料率의 70%인 境遇
 - 會員으로써 個人이 研究用役 受注에 功勞가 있으며 研究業務遂行 能力이 있어 事業에 參與하는 境遇 단, 事業이 公開되기전 情報를 最初로 入手하여 事業理事 經由 事業擔當 副會長과 事前에 業務推進 協議를 거친 후 成事시킨 事業으로 制限한다.
2. 指定 料率의 50%인 境遇
 - 國家機關으로부터 發注된 用役 契約金額으로 정상적인 事業 遂行이 困難할 境遇 단, 事業全擔 運營委員會의 協議를 거친 후 決定된 事業으로 制限한다.

第4條(調査費)

1. 調査費는 指定된 學會運營費 料率을 適用하지 않고 韓國地盤工學會 特別會員社들 간에 入札을 통해 業務 遂行者를 選定 및 價格을 決定하여 外注事業으로 運營한다.
2. 入札에 부치지 않는 境遇는 一般 研究用役 料率 基準에 따르며 아래와 같은 境遇에는 入札에 부치지 않는다.
 - (1) 調査費 30,000,000원 未滿
 - (2) 全體 研究 用役費의 20% 未滿단, 責任研究員(P.M)이 入札에 부치기를 希望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5條(調査用役 入札 方法) 研究用役 중 調査業務를 外注處理 하는 경우 入札方法을 다음과 같은 節次에 의해 豫定價 以下 最低價를 提示한 業體를 落札者로 選定한다.

1. 30,000,000원 未滿
 - 2개 以上の 業體를 P.M이 學會事務局에 推薦하면 事務局에서는 書類入札 의해 業體를 選定한다.
2. 30,000,000원 以上 1억원 未滿
 - 3개 以上の 業體를 P.M이 推薦하면 事務局에서 事業理事 주관하에 指名競争 入札에 의해 業體를 選定한다.
3. 1억원 以上
 - 學會 特別會員 加入된 有資格 會社들을 對象으로 學會事務局에서 事業理事 주관하에 公開競争入札 業體를 選定한다.

第6條(研究成果 審査 對象 事業의 選定 및 費用)

1. 研究成果 審査 對象 事業의 選定 基準은 다음과 같다.
 - 모든 學術研究用役 事業

2. 審査委員選定 및 審査 費用

－ (1) 審査委員의 選定은 事業管理委員會에서 遂行한다.

단, 最終 審査비는 다음 표와 같다.

학회 O/H 대상 금액	검토비용(/인)
3천만원 이하	3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4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50만원
1억원 이상 ~ 2억5천만원 이하	65만원
2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80만원
5억원 이상	100만원

第7條(研究報告書 作成 要領) 研究用役 遂行팀이 決定되면 學會 事務局에서 作成 要領을 案内한다.

第8條(研究用役의 指定 요율 면제) 우리 학회 관리 주최인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도로옹벽표준 개정시 계약 체결된 국고금 전액을 과업수행에 집행토록 한다.

附 則

1. 본 規程은 2001年 6月 1日이후 契約締結되는 事業부터 適用한다.

단, 第5條는 2001年 11月 26日이후 事業부터 適用한다.

2. 본 規程은 2005年 6月 27日이후 契約締結되는 事業부터 適用한다.

3. 본 規程은 2007年 8月 31日이후 契約締結되는 事業부터 適用한다.

4. 본 規程은 2008年 7月 4日이후 契約締結되는 事業부터 適用한다.